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3월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 제안이유

○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2003. 7. 31 행정자치부) 및 조례표준안이 시달(2003. 11. 28 경기도)됨에 따라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및 제5조)

○ 시장은 매년 보조금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현재도 시장이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액보조단체에 지침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 미등록단체도 지원을 해주는지? ○ 각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도 포함 되는지? ○ 이 조례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 행정자치부에서 언제까지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이양 하고 있으며, 그 일환임. ○ 전체 6억6천7백만원으로 상한선입니다. ○ 미등록단체라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함. ○ 네, 포함됩니다. ○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 별도의 지시는 없었으나 법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0호
의 결 년월일	2004. 3. 19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2003. 7. 31 행정자치부) 및 조례표준안이 시달(2003. 11. 28 경기도)됨에 따라,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시장은 매년 보조금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안 제10조 내지 제18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조금지원금액을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